

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

「고용보험법」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(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월 1일

고용노동부장관

I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

1.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,910원을 초과하는 경우:
401,910원

II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적용례

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3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